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대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16
----------	-------

발의연월일 : 2018. 5. 17.

발의자 : 곽대훈 · 이채익 · 김정재  
추경호 · 김규환 · 정유섭  
유민봉 · 최연혜 · 정진석  
김상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액화암모니아 · 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미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 · 제7항 및 제43조제4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3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의4.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⑦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 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  
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  
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  
지 여부

(7)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  
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 ③ (생  
락)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8) (현행 제6항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생 략)

⑤ (생 략)

2의2.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  
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  
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압가  
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